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15
----------	------

발의연월일 : 2017. 9. 27.

발의자 : 원혜영 · 김정우 · 신창현

설훈 · 송옥주 · 김경협

서영교 · 안호영 · 이찬열

조승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될 예정(2018. 2. 9. 시행)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도(私道)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외에 토지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도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거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형 여건,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4569호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 행방법) ① · ② (생 략)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 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 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 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 한다. <u>다만, 지형 여건, 주변 환</u> <u>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u> <u>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u> <u>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하여 사</u> <u>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p>법률 제14569호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 행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다만, 지형 여건, 주변 환</u> <u>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u> <u>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위치하지</u> <u>아니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u> <u>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